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24. 10. 24

요양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2025.11.04.)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노인요양 시설 1일당 장기요양 수가(24' 2.3대1, 25'26' 2.1대1) (단위 : 원)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1등급	84,240	16,850	90,450	18,090	93,070	18,614
2등급	78,150	15,630	83,910	16,780	86,340	17,268
3,4,5등급	73,800	14,760	79,240	15,840	81,540	16,308

2026년 장기요양 수가 적용내역

수급자 정보					
수급자		생년월일		등급	
수급자유형		본인부담률			

급여비용 안내 (30일 기준)				
년도	1일 수가	일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2024		30일		
2025		30일		
2026		30일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평균상향(1.48%)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6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 수가가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일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습니다.

요양원 대 표 (인)

2025.11.05 10:10 수정본

2026년 장기요양 수가변경 안내문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2025.11.04.)
※ 보건복지부 고시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인력배치 기준 개정 관련근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

1) 2025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1등급	84,240	16,850	86,030	17,200	88,520	17,700
2등급	78,150	15,630	79,810	15,960	82,120	16,420
3,4,5등급	73,800	14,760	75,360	15,070	77,540	15,500

2) 2025년 1월1일 기준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2024년 수가	2024년 본인부담금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26년 수가	2026년 본인부담금
1등급			90,450	18,090	93,070	18,614
2등급			83,910	16,780	86,340	17,268
3,4,5등급			79,240	15,840	81,540	16,308

3)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 : 원)

급여비용 안내 - 비급여 계산입력(30.5로 계산함)									
분류	인력배치기준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항목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포함)		
		총급여액	본인부담금			식사재료비 (간식비포함)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일반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2.3:1	2,699,860	539,972	323,983	215,989				
	2.1:1	2,838,635	567,727	340,636	227,091				
2등급	2.3:1	2,504,660	500,932	300,559	200,373				
	2.1:1	2,633,370	526,674	316,004	210,670				
3,4,5등급	2.3:1	2,364,970	472,994	283,796	189,198				
	2.1:1	2,486,970	497,394	298,436	198,958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6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평균상향(1.48%)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수가 인상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알려드리며, **2026년 01월 분부터 본인부담금 급여수가가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 일

요양원장 (관인생략)

① '26년 노인요양시설 수가

- (인상률) 2.90% (※ 2.3:1 수가는 2.89% 인상)

(단위 : 원)

구분 및 등급	2.1:1 기준		2.3:1 기준	
	'25년 급여비용	'26년 급여비용	'25년 급여비용	'26년 급여비용
1	90,450	93,070	86,030	88,520
2	83,910	86,340	79,810	82,120
3~5	79,240	81,540	75,360	77,540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6.1.1. ~ 2026.12.31. 적용

월 환산액 **2,156,88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통계청 통계분류 포털시스템 접속(https://kssc.kostat.go.kr:8443) → 한국표준직업분류선택 → 분류코드 또는 직종을 입력 후 검색)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전부 산입됩니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과반수(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필요